

변경 대비표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TDF2040 증권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

□ 변경 사항: ① 모투자신탁 책임운용인력 변경 및 부책임운용인력 삭제
(책임 : 한규민 → 이태하, 부책임 : 이태하 → 삭제)

② 퇴직연금 클래스 가입자격 명확화

③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

④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□ 효력발생일 : 2022. 10. 7.

□ 변경 내용

구분	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			
투자결정시 안내	유의사항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	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11.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“트러스톤 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”, “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”을	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 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)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11.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“트러스톤 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”, “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”을

		을 설정한 후 6 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각각 15 억원 미만인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“트러스톤 중장기 증권모투자신탁 [채권]”, “트러스톤글로벌채권증권모투자신탁 [채권-재간접형]”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설정된 후 6 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각각 15 억원 미만인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“트러스톤 중장기 증권모투자신탁 [채권]”, “트러스톤글로벌채권증권모투자신탁 [채권-재간접형]”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(<u>단, 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제외</u>)
--	--	---	--

요약정보

투자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2. 8. 31.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2. 8. 31 기준</u>
투자자 유의사항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	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 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	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 (<u>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</u>)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 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 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주요투자 위험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소규모에 따른 모투자신탁 변경 위험 :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6 개월이 되는 날	소규모에 따른 모투자신탁 변경 위험 :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“트러스톤 장

		에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“트러스톤 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”, “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” <u>원본액이 15 억원 미만인 경우</u> 해당 모투자신탁은 「트러스톤 중장기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», 「트러스톤 글로벌채권 증권모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」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, 수익자총회 없이 해지되거나,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해당 모투자신탁은 「트러스톤 중장기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», 「트러스톤 글로벌채권 증권모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」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	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”, “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”을 <u>설정</u>한 후 <u>6 개월이 되는 날 해당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 억원 미만인 경우</u> 해당 모투자신탁은 「트러스톤 중장기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», 「트러스톤 글로벌채권 증권모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」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<u>(단, 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제외)</u> 또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(<u>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(<u>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</u>)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, 수익자총회 없이 해지되거나,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해당 모투자신탁은 「트러스톤 중장기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», 「트러스톤 글로벌채권 증권모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」으로 전
--	--	---	---

			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매입방법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17 시 이전: 제 3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17 시 경과후: 제 4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	17 시 이전: <u>3 영업일</u> 기준가격으로 매입 17 시 경과후: <u>4 영업일</u> 기준가격으로 매입
환매방법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17 시 이전: 제 5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 9 영업일에 지급 17 시 경과후: 제 6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 10 영업일에 지급	17 시 이전: <u>5 영업일</u> 기준가격으로 <u>9 영업일</u> 에 지급 17 시 경과후: <u>6 영업일</u> 기준가격으로 <u>10 영업일</u> 에 지급
집합투자기구의 종류	퇴직연금 클래스 가입 자격 명확화	퇴직연금(P2)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구입입니다.	퇴직연금(P2)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구입입니다. <u>(단,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통하여 가입한 경우는 제외)</u>
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집합투자기구 연혁 업데이트	<신 설>	<u>2022.8.25 : 투자신탁 최초 설정</u>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2. 8. 31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]	모투자신탁 책임운용인력 변경 및 부책임운용인력 삭제 최근 기준으로 기재	- 트러스톤 ESG 레벨업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 책임운용역 : <u>한규민</u> 부책임운용역 : <u>이태하</u> -	- 트러스톤 ESG 레벨업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 책임운용역 : <u>이태하</u> <u><삭 제></u> <u>2022. 8. 31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2. 8. 31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다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	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업데이트	- 트러스톤 ESG 레벨업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 : <u>해당사항 없음</u>	- 트러스톤 ESG 레벨업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 :



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 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]			<u>책임운용역 : 한규민</u> <u>(2021.1.29~2022.10.06)</u> <u>책임운용역 : 이태하</u> <u>(2022.10.07~현재)</u> <u>부책임운용역 : 이태하</u> <u>(2021.1.29~2022.10.06)</u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	퇴직연금 클래스 가입 자격 명확화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Cp2)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Cp2-E)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중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Cp2)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(단,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통하여 가입한 경우는 제외)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Cp2-E)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중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(단,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통하여 가입한 경우는 제외)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	퇴직연금 클래스 가입 자격 명확화	퇴직연금(P2)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 구입니다.	퇴직연금(P2)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 구입니다.(단,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통하여 가입한 경우는 제외)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(1) (생략) (2) 트러스톤 인덱스알파 증권모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	<u><삭제></u> (1) (현행과 같음) (2) 트러스톤 인덱스알파 증권모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

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		(3) 트러스톤 ESG 레벨업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(4)~(5)(생략) 가) (생략)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(생략)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~ ⑤ (생략) (6) 트러스톤 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가) (생략)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(생략)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~ ⑤ (생략) 다) (생략) (7)(생략)	(3) 트러스톤 ESG 레벨업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(4)~(5)(현행과 같음) 가) (현행과 같음)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(현행과 같음)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 4-54조 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 81조제 3 항제 3 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(6) 트러스톤 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가) (현행과 같음)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(현행과 같음)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 4-54조 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 81조제 3 항제 3 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다) (현행과 같음) (7)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	---
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 (1) (생략) (2) 트러스톤 인덱스알파 증권모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 (3) 트러스톤 ESG 레벨업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(4)~(5)(생략) (6) 트러스톤 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. (가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(생략)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~ ⑤ (생략) (나) (생략)	<u>〈삭제〉</u> <u>〈삭제〉</u> (1) (현행과 같음) (2) 트러스톤 인덱스알파 증권모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 (3) 트러스톤 ESG 레벨업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(4)~(5)(현행과 같음) (6) 트러스톤 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. (가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(생략)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, <u>금융투자업규정 제 4-54 조 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 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3 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</u>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(나) (현행과 같음)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가. 일반위험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소규모에 따른 모투자신탁 변경 위험 : <u>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6 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「트러스톤장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」, 「트러스톤멀티에셋인컴증권모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」의</u>	소규모에 따른 모투자신탁 변경 위험 :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「트러스톤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」, 「트러스톤멀티에셋인컴증권모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」을 <u>설정 후 6 개월이 되는 날 해당 모투자신탁</u>

		<u>원본액이</u> 15 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모투자신탁은 「트러스트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권]」, 「트러스트 글로벌채권 증권모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」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<신 설> 또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「트러스트장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」, 「트러스트멀티에셋인컴증권모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」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, 수익자총회 없이 해지되거나,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「트러스트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권]」, 「트러스트 글로벌채권 증권모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」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	<u>의 원본액이</u> 15 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모투자신탁은 「트러스트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권]」, 「트러스트 글로벌채권 증권모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」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<u>(단, 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제외)</u> 또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「트러스트장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」, 「트러스트멀티에셋인컴증권모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」을 설정한 후 1 년 <u>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)</u>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설정하고 1 년 <u>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)</u>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, 수익자총회 없이 해지되거나,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「트러스트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권]」, 「트러스트 글로벌채권 증권모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」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: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	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: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

		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	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한 후 1 년(<u>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 년(<u>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</u>)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11. 매입, 환매,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	퇴직연금 클래스 가입 자격 명확화	2) 종류별 매입자격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Cp2)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Cp2-E)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	2) 종류별 매입자격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Cp2)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(<u>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통하여 가입한 경우는 제외</u>)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Cp2-E)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

		를 설정한 자 중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7 시[오후 5 시]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 3 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② 17 시[오후 5 시]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 4 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③(생략)	를 설정한 자 중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(<u>단,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</u>를 통하여 가입한 경우는 제외) 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7 시[오후 5 시]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3 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② 17 시[오후 5 시]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4 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③(현행과 같음)
11. 매입, 환매,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2)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① 17 시[오후 5 시]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제 5 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제 9 영업일</u>에 환매금액 지급 ② 17 시[오후 5 시]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제 6 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제 10 영업일</u>에 환매금액 지급 5) 환매제한	2)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① 17 시[오후 5 시]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5 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9 영업일</u>에 환매금액 지급 ② 17 시[오후 5 시]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6 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10 영업일</u>에 환매금액 지급 5) 환매제한

		다음의 경우 수익자는 수익 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.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<u>제5영업일</u>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<u>제 6 영업일</u>)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(생략)	다음의 경우 수익자는 수익 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.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<u>5영업일</u>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<u>6 영업일</u>)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(현행과 같음)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주식 정정	- 주 3) 증권거래비용은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. <u>이 투자신탁은 2022년 8월 5일 현재 최초 설정 전으로 증권거래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</u> 주 6) 금융거래비용은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, <u>이 투자신탁은 2022년 8월 5일 현재 최초 설정 전으로 금융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</u>	<u>2022. 8. 31 기준</u> 주 3) 증권거래비용은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. <u>이 투자신탁은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증권거래비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.</u> 주 6) 금융거래비용은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, <u>이 투자신탁은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금융비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.</u>
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

트러스톤자산운용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2. 8. 31 기준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2. 8. 31 기준</u>
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수익자총회 등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<u>제 5 영업일</u>	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<u>5 영업일</u>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. 임의해지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1)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① ~ ② (생략) ③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(2) ~ (3) (생략)	(1)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한 후 1 년(<u>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(<u>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</u>)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(2) ~ (3) (현행과 같음)

		(4)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6 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“트러스톤 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”, “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”의 원본액이 15 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모투자신탁은 「트러스톤 중장기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», 「트러스톤 글로벌채권 증권모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」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, (1)의 ③ 및 ④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없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	(4)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“트러스톤 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”, “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”을 <u>설정 후 6 개월이 되는 날 해당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 억원 미만인 경우</u> 해당 모투자신탁은 「트러스톤 중장기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», 「트러스톤 글로벌채권 증권모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」으로 변경(단, <u>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제외</u>)될 수 있으며, (1)의 ③ 및 ④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없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2)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·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의 본·지점,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. ① ~ ⑦ (생략) ⑧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	(2)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·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의 본·지점,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.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 이후 1 년(법 시행령 제 81 조제 3

		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(생략)	<u>항제 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 <u>(법 시행령 제 81조제 3항제 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</u>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(현행과 같음)
--	--	--	---